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기관 변경·사무권한 이양 및 근거법규 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 본청과 읍면동의 사무 권한과 책임이 불부합 되는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상위법 개정 및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2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 2건 등 4건 수정
- 상위법 개정 및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1건, 허가과 소관 사무 1건 삭제 등 2건 삭제
- 사무권한 이양 및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1건, 건설과 소관 사무 6건 등 7건 신설 등의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수 정(4건)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 나.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다.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삭 제(2건)

- 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의료보호관련 단위사무(2건)
- 나.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 착공신고 수리사무

3. 신설(7건)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중 개장허가 및 개인묘지설치 단위사무(2건)
-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다.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라.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 마.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 바.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 사.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341
입 안 자	총 무 과 장	홍 덕 기
	주민자치추진팀장	백 철 현
	담 당 자	한 승 철

[별표]

위 임 사 무 명

【종무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 가의 처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읍·면·동

【세무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시세부과사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① 고지서 교부 ② 체납세 징수 독려	지방세법 제25조	읍·면
2.	○ 시세자진신고 납부에 따 른 납부서 교부		동법 제3조, 제4조	읍·면
3.	○ 시세 납세증명 및 세목 별 과세증명 발급		동법 제38조	읍·면·동

【사회복지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 용 신고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④ 개인묘지 설치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동법 제8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1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 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읍·면·동

【건설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개축·중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④ 동 허가의 고시 ⑤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 재배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동법 제5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5조 제1항 제9호 동법 제5조 제6항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 동법 제5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5조 제1항 제6호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2.	○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 징수 ③ 원상회복 등	동법 제9조 제1항 동법 제9조 제4항 동법 제12조	읍·면 읍·면 읍·면
3.	○ 제1호의 점·사용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③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 허가 등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4.	○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⑥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단, 읍·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동법 제13조	읍·면
		⑦ 허가, 신고,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동법 제17조	읍·면
		⑧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동법 제17조	읍·면
		⑨ 과태료의 부과·징수(단,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동법 제20조	읍·면

【허가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신고 수리	건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읍·면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동법 제15조제2항	읍·면
		③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동법 제72조	읍·면
		④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다만, 건축법제9조, 제15조제2항, 제72조,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한함)	동법 제69조	읍·면
2.	○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7조	읍·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이륜자동차대장 비치 관 리 ②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및 번호지정 ③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 착 등 ④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⑤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⑥ 사용폐지신고 등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 경신고(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 법 시행령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내지 제103조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 읍·면·동
2.	○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 변경(주소)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②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변경 및 번호판 부착 의무 위반 과태료 부 과·징수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동 법 제84조 제2항 제2호 동법 제48조, 제49조 제 84조 제2항 제2의2호	읍·면·동 읍·면

신 구 대 비 표

총무과 소관 : 현행과 같음

세무과 소관 :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과 소관

현			개			정		사유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1. 패·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읍·면	1. 장사들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읍·면	위임사무명 변경
	② 공설매장 화장 및 날골증명	(신 설)	읍·면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간 이용 신고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간 이용 신고	동법 제8조	읍·면	근거법규 개정 및 단위사무명 변경
	(신 설)	(신 설)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동법 제23조	읍·면	사무권한 이양에 따른 조례제정
	(신 설)	(신 설)		④ 개인묘지 설치신고	④ 개인묘지 설치신고	동법 제13조	읍·면	사무권한 이양에 따른 조례제정

현			행			개			정			안			사유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위임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2.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험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의료보호중 연도별 재사용확인	의료보호법 제7 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조 제2 항	3. (삭 제)	① (삭 제)	(삭 제)	(삭 제)		사무 이관 (본청 업무)							
	②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발급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 8조 제2항	(삭 제)	② (삭 제)	(삭 제)	(삭 제)		사무 이관 (본청 업무)							
	③ 의료보호중 회수	의료보호법 시 행규칙 제9조	의료급여중 반납 및 회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③ 의료급여중 회수	의료급여법 시 행규칙 제15조	읍·면·동	근거법규 개정 및 수임기관 변경								

건설과 소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수임기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수임기관	근거법규	수임기관	근거법규	수임기관				
1. (신설)	(신설)	(신설)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유수면 관리 ② 공작물을 신축·개축·중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③ 기타 점용허가	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동법 제5조 제1항, 제2항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동법 제5조 제1항, 제2항	읍·면	사무권한 이양					

신 구 대 비 표

총무과 소관 : 현행과 같음

세무과 소관 :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과 소관

현			행			개			안			사유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사유				
1.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 화장 개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읍·면	1.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현행과 같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읍·면	위임사무명 변경				
	② 공설매장 화장 및 납골증명	(신 설)	읍·면		②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이용 신고	동법 제8조	읍·면	근거법규 개정 및 단위사무명 변경				
	(신 설)	(신 설)			③ 개장허가(무연분묘)	동법 제23조	읍·면	사무권한 이양				
	(신 설)	(신 설)			④ 개인묘지 설치신고	동법 제13조	읍·면	사무권한 이양				

현			행			개 정 안			사유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신설)	(신설)	(신설)			④ 동허가의 고시	동법 제5조 제6항	읍·면	사무권한 이양	
					⑤ 물을 끌어 들어거나 물을 내 보내는 행위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			
					⑥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동법 제5조 제1항 제7호			
					⑦ 토석 등의 채취 및 식물 재배 허가	동법 제5조 제1항 제6호			
2. (신설)	(신설)	(신설)		2. 제1호의 점·사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료, 사용료 징수·감면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 징수 ③ 원상회복 등	동법 제9조 제1항 동법 제9조 제4항 동법 제12조	읍·면	사무권한 이양	
3. (신설)	(신설)	(신설)		3. 제1호의 점·사용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처리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③ 발기인 등의 권리 승계 신고 처리 ④ 허가기간 연장허가 등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읍·면	사무권한 이양	

원			행			개 정 안			사유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4. (신 설)	(신 설)	(신 설)		4. 제1호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자가 법 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 취하 는 권한	① 허가의 취소 ② 점·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 ③ 원상회복 또는 공작 물 등의 개축·이전 등 기타의 처분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7조	읍·면 읍·면 읍·면	사무권한 이양	
5. (신 설)	(신 설)	(신 설)		5. 공유수면 관리를 위 한 조사		동법 제14조	읍·면	사무권한 이양	
6. (신 설)	(신 설)	(신 설)		6.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 21조 제1항	읍·면	사무권한 이양	

도시과 소관 : 현행과 같음

허가과 소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수임기관	근거법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생 략)	읍·면		1.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읍·면	근거법규 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읍·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읍·면							
	④ <u>착공신고 수리(도시 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연면적200㎡ 미만인 건축물)</u>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읍·면							
2.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 략)	읍·면		2.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읍·면							

교통행정과 소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생 략)		읍·면	1.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읍·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수임기관 추가 단위사무명 변경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사용본거지)		읍·면		⑦ (현행과 같음)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① 차량등록원부 (생 략)		읍·면·동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자동차등록원부 (생 략)	(현행과 같음)	읍·면·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